

2026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상반기 모집 공고

이공계 여성의 R&D 분야 복귀 및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2026년 상반기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문애리

2026년 공고 주요 사항

① 사업 지원 규모 및 공고 일정

- (공고 일정) 반기별 총 **2회** 공고 / (지원 규모) 연간 총 **304명** 내외

<2026년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공고 일정(안)>

구분	공고 일정(안)	지원 시작일(안)
상반기	3/16(월) ~ 4/20(월)	5월
하반기	8월 중	10월

② (신규) 트랙3. 연구지원직(Staff Scientist) 지원 ☞ 7쪽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연구지원직 직무로 채용 시 인건비 등 지원

<연구지원직(Staff Scientist)의 정의>

석사 이상 학위와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연구책임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전문성을 기반으로 연구기획·관리, 연구보안·데이터관리, 고가장비 운용, 기술사업화 등 연구 전반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단, 일반적인 행정업무는 제외됨)

- 기관 신청·선정 후 인력 매칭기간(3주) 부여, 인력 심사 후 지원 확정

※ 인력 채용이 확정된 기관은 기관과 인력이 함께 신청, 일괄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③ 운영 지침 일부 개선 및 안내 ☞ [별첨] 사업 운영 지침 참고

- 협약 유지 및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와 항목별 제출 서류 목록 구체화

- 사업 평가 지침 개정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표준 서식(별지) 신설·정비

1. 사업 목적

-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 R&D 관련 분야 복귀지원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누수 방지 및 활용률 제고

2. 지원 분야

- 참여 기관의 인력 활용 수요에 따라, 3개 트랙으로 지원

구분	(트랙1) 경력복귀 과제지원	(트랙2)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	(트랙3) 연구지원직 지원
지원조건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신규 채용 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인턴 3개월 채용 후 일반직 전환 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연구지원직(Staff Scientist)으로 신규 채용 시
대상	인력	* 이공계 학사 이상 * 여성과학기술인 *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이공계 석사 이상 * 연구경력 3년 이상 보유
	기관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기업, 대학, 출연연 등) * 대학 내 연구기관	
지원금액	(학 석사) 최대 2,100만원/연 (박사) 최대 2,300만원/연	(인턴직 3개월) 300만원 (일반직 9개월) 학 석사 1,800만원, 박사 2,000만원	최대 2,300만원/연
지원기간	최대 3년	최대 3년 * 인턴십 3개월 후 → 일반직 전환, 9개월 지원 (최초 12개월)	최대 3년
지원인원	활용책임자 1명당 2인	1개 기업당 1명	1개 연구기관당 2명
지원규모	000명 내외		10명 이내

※ 트랙 간 중복 지원 불가

※ 트랙2.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 신청대상 중 선정되지 않은 경우, 트랙1. 경력복귀 과제 지원 후보군으로 활용(지원 조건은 트랙1과 동일)

3.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6.03.16.(월) ~ 2026.04.20.(월), 18:00까지
- 접수처: W브릿지(www.wbridge.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 조건: 근무(예정) 기관과 인력을 확정하여 기관·인력 공동 신청
 - 단, 트랙 3은 기관 우선 신청 후 인력 매칭 기간(3주) 부여 가능

I 지원 내용 및 신청 자격

트랙1. 경력복귀 과제지원

1. 지원 개요

가. 지원 규모

- 신규과제 000개 내외 선정
- 신규과제의 경우 활용책임자* 1명당 인력 2명까지 지원 가능
 - * 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및 업무수행, 조직적응 등을 지도·관리하는 책임자

나. 지원 기간: 최대 3년

-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구분	학·석사	박사
정부지원금	최대 2,100만원/년	최대 2,300만원/년
최소연봉	3,000만원/년	3,300만원/년

-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 지급
 - ※ 연봉: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라 변동 가능)
- 정부지원금의 5% 이상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사용 필수
-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변동)
 - ※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참고1] 확인
- 교육·멘토링: 참여인력으로 선정된 인력에게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연 1회 필수 참여)
 - ※ 사업 참여인력은 반드시 WISET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함
 - ※ 교육 과정 및 일정은 사업 참여인력 대상 별도 안내 예정

2. 지원 자격

가. 참여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어느 하나 해당 시)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에 해당하는 기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구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나. 참여 인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 학사(전문학사 포함) 또는 비이공계 석·박사의 경우 과학기술 관련 분야 업무경력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함
 - ※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인턴,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시 신청 가능(관련 증빙 필수)
 - ※ 의·약학, 치의학, 산업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단, 수행업무가 R&D 관련 업무이어야 함)
- (재도전 특별지원) 기존 참여인력 중 협약을 중단한 경우, 최대 3년의 지원 기간 중 기존에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하여 신규 지원(단, 1회에 한함)
 - ※ 계속지원 탈락 또는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 잔여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재도전 특별지원 내용 예시 >

- (예시 1) 기존에 1년 3개월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B연구원 : 최대 3년 중 1년 3개월을 제외한 1년 7개월 지원에 대하여 지원 신청 가능(잔여기간 6개월 이상)
- (예시 2) 기존에 2년 10개월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C연구원 : 지원불가(잔여기간 6개월 미만)

- 참여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수행

< 업무 내용 예시 >

- 기초연구, 기술 및 제품 개발, S/W 개발, 산업디자인, 특허 조사·분석, 시장 기술조사
- 연구장비·기자재 운용, 설계,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 전문적 연구지원, 정보 가공·분석, 특허출원
- 시제품 설계 시험·제작, 기술마케팅, 기술영업, 기술협력 등

- ※ 연구행정직 불가

트랙2.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

1. 지원 개요

가. 지원 규모: 신규 00건 내외 선정(기업당 1명 신청 가능)

나. 지원 기간: 최대 3년

○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 **인턴십 계약 3개월 이후 일반직(정규직 또는 계약직) 전환 필수**

※ 일반직 전환 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규모 내에서 우선 선발

○ 일반직 전환 이후 트랙1. 경력복귀 과제지원의 기준연봉, 사업비 산정 기준 (교육훈련 등을 위한 필수 연구활동비 최소 5% 책정) 등 적용

다. 지원 내용: 인턴십 기간과 일반직 기간 구분

○ 지원 금액

구분	학·석사(2,100만원/년)		박사(2,300만원/년)	
	인턴십	일반직	인턴십	일반직
정부지원금	300만원	1,8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필수 연구활동비 5%	미적용	적용(90만원)	미적용	적용(100만원)
최소연봉	3,000만원/년		3,300만원/년	

-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 지급

※ 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라 변동 가능)

- 일반직 전환 이후 정부지원금 중 5% 이상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사용 필수(학·석사 90만원, 박사 100만원)

- 인턴십 기간은 시간선택제 적용 불가

※ 일반직 기간부터 시간선택제 적용 가능, 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변동

※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참고1] 확인

○ 교육·멘토링: 참여인력으로 선정된 인력에게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연 1회 필수 참여)

※ 사업 참여인력은 반드시 WISET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함

※ 교육 과정 및 일정은 사업 참여인력 대상 별도 안내 예정

2. 지원 자격

가. 참여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어느 하나 해당 시)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업

나. 참여 인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학사(전문학사 포함) 또는 비이공계 석·박사의 경우 과학기술 관련 분야 업무경력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함

※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인턴,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시 신청 가능(관련 증명 필수)

※ 의·약학, 치의학, 산업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단, 수행업무가 R&D 관련 업무이어야 함)

○ (재도전 특별지원) 기존 참여인력 중 협약을 중단한 경우, 최대 3년의 지원 기간 중 기존에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하여 신규 지원(단, 1회에 한함)

※ 계속지원 탈락 또는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잔여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재도전 특별지원 내용 예시 >

- (예시 1) 기존에 1년 3개월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B연구원 : 최대 3년 중 1년 3개월을 제외한 1년 7개월 지원에 대하여 지원 신청 가능(잔여기간 6개월 이상)
- (예시 2) 기존에 2년 10개월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C연구원 : 지원불가(잔여기간 6개월 미만)

○ 참여인력은 과학기술연구개발 또는 과학기술서비스 직무 수행

< 업무 내용 예시 >

- 기초연구, 기술 및 제품 개발, SW 개발, 산업디자인, 특허 조사·분석, 시장 기술조사
- 연구장비·기자재 운용, 설계,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 전문적 연구지원, 정보 가공·분석, 특허출원
- 시제품 설계 시험·제작, 기술마케팅, 기술영업, 기술협력 등

※ 연구행정직 불가

트랙3. 연구지원직(Staff Scientist) 지원

1. 지원 개요

가. 지원 규모: 신규 10명 내외 선정(연구기관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

나. 지원 기간: 최대 3년

-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구분	석·박사
정부지원금	최대 2,300만원/연 (* 석·박사 동일)
최소연봉	3,500만원/연 (* 풀타임 기준)

- 인건비 산정: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 지급

※ 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라 변동 가능)

- 정부지원금의 5% 이상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사용 필수

-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변동)

※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참고1] 확인

- 교육·멘토링: 선정된 참여인력에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연 1회 필수 참여)

※ 사업 참여인력은 반드시 WISSET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함

※ 교육 과정 및 일정은 사업 참여인력 대상 별도 안내 예정

라. 연구지원직(Staff Scientist) 직무 상세 안내

- 직무 표기 : 연구지원직

- 대상 정의 :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와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

- 수행 직무 : 연구책임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되 전문성을 기반으로 연구기획·관리, 연구보안·데이터관리, 고가장비 운용, 기술사업화 등 연구 전반의 직무 수행

※ 주의사항: 일반적인 연구행정업무(서무, 타이핑, 영수증 처리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일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지원이 중단·환수 조치됨

2. 지원 자격

가. 참여 기관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공동기기센터 등)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 최근 3년 평균 R&D 연구비 연 3억원 이상 보유 기관

나. 참여 인력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석사 학위에 준하는 전문자격(기사 이상) 보유 시 동등 학력으로 인정

※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인턴,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시 신청 가능(관련 증빙 필수)

※ 의·약학, 치의학, 산업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단, 수행업무가 R&D 관련 업무이어야 함)

- 3년 이상 연구경력 보유자

- 참여인력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지원직 직무 수행

< 업무 내용 예시 >

1. 연구기획/관리	· 과제 기획 보조, 연구 성과(KPI) 지표 관리, 연구비 집행 계획 수립 및 관리, 연구윤리 및 연구행정 체계 운영 등
2. 연구보안/데이터	· 연구 데이터 관리 계획(DMP) 운영, 데이터 정제분석 및 품질관리, 연구 보안 및 기록물 관리, 데이터 아카이빙 및 재현성 관리 등
3. 장비 인프라	· 전문 연구 장비(NMR, SEM 등) 운용 및 유지보수, 장비 공동활용 체계 운영, 실험 프로토콜 표준화, 안전관리 및 장비 매뉴얼 정비 등
4. 기술 사업화	· 특허 조사·분석, 기술 이전 지원,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매니징, 연구 성과 확산 전략 수립 및 지원 등

※ 일반적인 행정업무는 불가

다. (재도전 특별지원) 기존 참여인력 중 협약을 중단한 경우, 최대 3년의 지원기간 중 기존에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규 지원 가능 (단, 1회에 한함)

※ 계속지원 탈락 또는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재도전 특별지원 내용 예시 >

- (예시 1) 기존에 1년 3개월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B연구원 : 최대 3년 중 1년 3개월을 제외한 1년 7개월 지원에 대하여 지원 신청 가능(잔여기간 6개월 이상)
- (예시 2) 기존에 2년 10개월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C연구원 : 지원불가(잔여기간 6개월 미만)

3. 선정 절차 및 일정

- 기관 우선 신청·평가를 통해 승인 후, 인력 채용 기간(3주) 내에 인력 신청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 인력 채용 관련 채용공고, 내부품의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절차 및 일정:

신청 접수	(기관) 요건심사/전문가 평가	기관 우선 승인 및 인력 채용	(인력) 요건심사/전문가 평가	선정	지원 시작
기관 신청서 제출	지원자격 여부 심사 기관의 R&D역량 및 활용계획, 지원 필요성 평가	기관 우선 승인 통보, 인력 채용 및 신청서 제출	지원자격 여부 심사 인력의 R&D역량 및 지원 필요성 평가	최종 선정 공고 게시	협약 및 지원금 지급
3/16~4/20	4/27~5/1	~5/21	5/22~5/27	~5/29	6월

- ※ 인력 채용이 확정된 기관은 기관과 인력이 함께 신청, 일괄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 채용 예정자는 지원 시작일 이전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시작해야 함
- ※ 진행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II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가. 신청 기간: 2026년 3월 16일 ~ 2026년 4월 20일 18:00까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나. 신청 조건: 근무(예정) 기관 또는 인력을 확정하여 기관과 인력이 **모두** 신청

※ (트랙 3 : 채용 확정 기관) 근무 인력을 확정하여 기관과 인력이 공동 신청
(트랙 3 : 채용 예정 기관) 기관 우선 신청하고 기관 선정 후, 3주 이내 인력 매칭(채용) 및 인력 심사 진행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인력 간 매칭을 위하여 W브리짓지 이용 가능(별첨자료 참고)

다. 신청 방법 : W브리짓지 사이트(www.wbridge.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W브리짓지 로그인 → 일자리 → 경력복귀지원 → 모집 공고 → 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W브리짓지 로그인ID 1개당 신청서 1건 작성 가능

- 1개의 기관에서 여러 명의 활용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활용책임자별로 ID 생성(또는 기관담당자별로 ID 생성)하여 신청하여야 함(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ID 생성 가능)

2. 제출 서류

가. 신청 기관

신청기관 : 트랙1, 트랙2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구분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 W브리짓지(www.wbridge.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2	사업자등록증	-	
3	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 (대학, 공공연 제외)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 벤처기업 확인서 - 이노비즈 확인서 - 연구소기업 등록증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 해당 내용 중 택1 ※ 신청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불인정	필수
4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대학, 공공연 제외)	- 2023년~2025년 공시된 국제청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2025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022~2024년으로 제출 ※ 회계감사보고서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원본/날인) ※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설립 이후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5	가점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 가족친화인증서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불인정	해당시

신청기관 : 트랙3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1	사업신청서	- W브리징지(www.wbridge.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필수
2	사업자등록증	-	
3	대학 소속 연구기관 증빙서류	-	
4	직무기술서	-	
5	R&D 수행실적 증빙 (최근 3년)	- 연구과제 수행 실적증명서 - 국가 R&D 과제 수행 자료 (과제고유번호 포함 필수) ※ NTIS 과제 조회 화면, E-나라지표 또는 IRIS 자료	
6	인력채용공고 또는 채용 관련 내부 품의(기안)문서	- '채용 예정 기관'의 경우 필수 제출	해당시
7	가점 증빙서류	- 가족친화인증서 - 우수 기업부실연구소 지정 ※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불인정	해당시

신청인력 : 트랙3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1	사업신청서	- W브리징지(www.wbridge.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필수	
2	졸업증명서 사본	-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		
3	경력증명서	- 연구경력 3년 이상 필수 증빙 제출		
4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발급 - 개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 상용 선택 후 조회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신청 → 증명원 출력 - 개별사업장, 선택 사업장 이력내역서 불인정 - 신청일 해당 서류 발급하여 제출		
5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참고5(22쪽) 예시 화면 반드시 확인)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발급 ① 마이페이지(개인) → 로그인 상태로 본인 이름이 보이도록 캡처 ② 마이페이지(개인) → 참여 프로그램 관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일자리 참여내역 → 신청일자 6개월/1년 선택하여 검색 후 전체화면 캡처 ③ 위 ①과 ② 캡처 화면 모두 제출 - 사업신청일 포함하여 검색 후 신청 이력의 유/무와 관계 없이 제출 - 조회기간 최소 6개월 이상(사업신청일 포함)		
6	근로계약서	-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턴 또는 시간제 인력의 경우 - 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제출		해당시
7	기타	- 석사 학위에 준하는 전자자격증(기사 자격 이상) 사본 -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신청 인력

신청인력 : 트랙1, 트랙2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1	사업신청서	- W브리징지(www.wbridge.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필수
2	졸업증명서 사본	-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	
3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발급 - 개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 상용 선택 후 조회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신청 → 증명원 출력 - 개별사업장, 선택 사업장 이력내역서 불인정 - 신청일 해당 서류 발급하여 제출	
4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참고5(22쪽) 예시 화면 반드시 확인)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발급 ① 마이페이지(개인) → 로그인 상태로 본인 이름이 보이도록 캡처 ② 마이페이지(개인) → 참여 프로그램 관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일자리 참여내역 → 신청일자 6개월/1년 선택하여 검색 후 전체화면 캡처 ③ 위 ①과 ② 캡처 화면 모두 제출 - 사업신청일 포함하여 검색 후 신청 이력의 유/무와 관계 없이 제출 - 조회기간 최소 6개월 이상(사업신청일 포함)	
5	경력증명서	-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이력사항에 대하여 제출	해당시
6	근로계약서	-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턴 또는 시간제 인력의 경우 - 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제출	
7	기타	-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는 비식별처리하여 제출
- 날인이 없는 서류는 불인정 처리

4. 문의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R&D경력복귀지원팀
- 02-6411-1011, 02-6411-1015 / jhjang@wiset.or.kr

Ⅲ 평가 방법 및 기준

1. 평가 방법

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하여 요건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우대가 점을 포함한 총점 기준으로 모집 규모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나. 전문가 평가결과 60점 미만은(100점 만점) 탈락 처리

2. 평가 기준

가. 요건심사: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 신청자격 부합성,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 검토

나. 전문가평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평가

- 신청기관이 민간기업인 경우,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평가하여 기관 평가에 반영 ※ 단, 완전자본잠식의 경우 요건 탈락으로 함

- [트랙1] 경력복귀 과제지원, [트랙2] 경력보유여성 제도약 지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관 평가	연구개발 인력 지원의 필요성	- 여성인력 활용현황(여성연구개발인력 비율) - 인력 활용 및 양성 계획의 구체성(업무 및 교육·훈련) 등	15
	연구개발역량 및 인력활용 인프라	- R&D 수행 규모 및 성과의 우수성 등 - 근무여건의 우수성(인건비, 근무시간, 복지제도) 등 - 인력의 고용안정성 확보 계획 - (민간기업) 재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25
인력 평가	경력단절 극복 및 유지 계획	- 경력단절 원인의 해결현황 및 극복의지 - 향후 역량개발 및 유지를 위한 계획의 구체성	20
	연구(업무)수행 역량	- 기존 경력 기간 및 경력의 우수성 - 지원 희망분야와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의 연관성	20
매칭 평가	기관-인력 매칭평가	- 인력의 전공/경력과 기관이 요구하는 직무의 매칭 적합성 - 매칭된 기관과의 사업 수행을 통한 인력의 발전 가능성	20
합계			100

- [트랙3] 연구지원직 지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관 평가	인력지원의 필요성	- 인력의 연구지원 업무(기획, 데이터, 장비 등) 참여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30	
		- 인력에 대한 경력개발 지원계획의 구체성		
	인력 활용 계획	- 근무여건의 우수성(인건비, 근무시간, 복지제도) 등 - 인력의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 및 실현 가능성	30	
연구 인프라의 우수성	연구 인프라의 우수성	- 최근 3년 평균 연구비 집행 실적 - R&D 수행규모 및 성과의 우수성	40	
		경력단절 극복 및 유지계획	- 경력단절 원인의 해결현황 및 극복의지 - 향후 역량개발 및 경력유지를 위한 계획의 구체성	20
인력 평가	연구(업무)수행 역량	- 기존 경력 기간 및 경력의 우수성 - 연구지원 직무 관련 경력, 장비운영 경력 여부 등 - 지원 희망분야와 인력의 업무 수행 능력의 연관성	30	
		기관-인력 매칭평가	- 인력의 전공/경력과 기관이 요구하는 직무의 매칭 적합성 - 매칭된 기관과의 사업 수행을 통한 인력의 발전 가능성 - 인력의 투입이 해당 연구실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기대 효과	50
			합계	

- 제도전 특별지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관 평가	연구개발 인력 지원의 필요성	- 여성인력 활용현황(여성연구개발인력 비율) - 인력 활용 및 양성 계획의 구체성(업무 및 교육·훈련) 등	15
	연구개발역량 및 인력활용 인프라	- R&D 수행 규모 및 성과의 우수성 등 - 근무여건의 우수성(인건비, 근무시간, 복지제도) 등 - 인력의 고용안정성 확보 계획 - (민간기업) 재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25
인력 평가	경력재단절 극복 및 유지 계획	- 기존 사업중단 사유 및 복귀를 위한 노력 현황 - 향후 역량개발 및 유지를 위한 계획의 구체성	20
	연구(업무) 수행 성과	- 기존 사업참여 기간의 연구(업무)성과 - 기존 사업참여 기간 동안 역량개발 등 노력한 내용	20
매칭 평가	기관-인력 매칭평가	- 인력의 전공/경력과 기관이 요구하는 직무의 매칭 적합성 - 매칭된 기관과의 사업 수행을 통한 인력의 발전 가능성	20
합계			100

다. 우대가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가점	기관이 여성기업인 경우	1
	기관이 지방(서울, 경기, 인천 외의 지역) 기업인 경우	1
	기관이 가족친화인증기관인 경우	1
	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1
	기관이 우수기업연구소 선정 기업인 경우	1
	경력복귀 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여성과학기술인을 3년의 사업지원 종료 후에도 고용유지 중인 기관(2022년 사업 종료 기관 대상)	1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 예정인 경우 ※ 신청 시 정규직 채용(예정)으로 신청했으나 추후 정규직 채용이 아닐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감점	최근 3년 이내('21~'23년) 최종성과평가(3년 종료 시)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활용책임자)	-2
	최근 3년 이내('21~'23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중단 경력이 있는 기관(활용책임자)	-3

* 참여인력의 취·창업, 임신·출산·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참여인력 또는 활용책임자 본인의 사고·질환 등

3. 평가 결과 : 선정 공고문 게시 및 개별 통보(이메일 발송)

4. 결과 발표 및 향후 일정(안)

가. 선정공고 게시일 : 2026.05.11.(월)

나. 협약 체결 안내 : 2026.05.12.(화) ~

※ 진행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IV 유의 사항

- 채용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4대 보험 및 퇴직금 필수
- 참여기관은 신청 자격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지원 기간 동안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동 사업은 과제당 사업비가 소규모이고,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포함된 사업으로 **간접비 계상 불가**
- 사업의 수혜를 받은 참여인력 및 기관은 지원종료 후 2년까지 인력의 경력 현황에 대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함
 - 신청 제외대상 기관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기관 및 인력의 신청자격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등
 - 이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활용책임자) 및 인력은 상호 간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기관은 인권경영 이행 및 조치에 협조해야 함
- 신청기관 및 인력은 평가의 절차 및 결과(종합의견)에 대하여 1회에 한해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참고 1**정부지원금 산정 안내(트랙1, 트랙3 기준)****□ 정부지원금 지원 금액 : 학·석사 2,100만원/년, 박사 2,300만원/년**

○ 참여 기업은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 참여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

※ 기준연봉 : 기관이 본 사업 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최소연봉 (기준연봉 초과 가능)

※ 기준연봉 산정방법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정부지원금의 5%(학·석사 1,050,000원/박사 1,150,000원) 이상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사용

< 12개월 기준 정부지원금 산정 금액 >

최종학력	기준연봉 (전일제)	정부지원금(12개월)		
		인건비	연구활동비	계
학·석사	3,000만원/년	19,950,000원	1,050,000원	21,000,000원
박사	3,300만원/년	21,850,000원	1,150,000원	23,000,000원

※ 정부지원금 : 기준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1년 기준)

□ 시간선택제로 채용 가능

○ 시간선택제 채용 시 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변동

①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 (예시) 시간선택제 채용자 A(석사)의 연봉이 3,200만원일 경우

→ 석사의 기준연봉이 3,0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높음

→ 정부지원금 2,100만원 전액 지급

②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

$$[\text{계산식}] \quad \frac{\text{시간선택제 근무 시 연봉}}{\text{전일제 근무 시 연봉}} \times \text{정부지원금 전액}$$

※ 전일제 근무시 연봉은 참여기관의 인사기준 및 경력을 산정하여 기관에서 자체 결정

※ (예시) 시간선택제 채용자 B(박사)의 연봉이 2,800만원일 경우

(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3,500만원)

→ 박사의 기준연봉이 3,3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낮음

$$\rightarrow \frac{\text{시간선택제 근무 시 연봉}}{\text{전일제 근무 시 연봉}} \times \text{정부지원금 전액} = \frac{2,800\text{만원}}{3,500\text{만원}} \times 2,300\text{만원} = 1,840\text{만원}$$

(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참여 기업에서 확인)

참고 2**신청 자격요건****□ (인력) 동등학력 인정요건(트랙1. 및 트랙2. 만 해당)**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자
- 비이공계 학위 소지자로서(학·석·박사) 과학기술분야 연구직·기술직 등의 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상기 동등학력 인정 요건은 **트랙3. 연구지원직 지원은 적용되지 않음**

□ (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 기관**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참고 3 신청 제한 사항

□ 기관 제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
- 동 사업은 채용을 전제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3년 이상 채용 가능해야 함 - (트랙1) 과제지원의 경우 '인턴'으로 인력 활용 불가
- 제재조치 등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임금체불, 노동법 위반 등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0조 1항에 의한 '신청제외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제외 기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잠식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호인원우선주(PO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절"

□ 인력 제한 사항

-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중복지원 불가)
- 동 사업(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학위과정 중인 자 신청불가
- 제재조치 등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신청기관의 기관장(사업주) 또는 활용책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사업기간 중 친족관계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

< 친족관계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 제1항】**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참고 4 사업 연간일정

절차	내용	수행주체
사업 공고	· 신규 참여기관 및 참여인력 모집 공고	WISET
↓		
사업 신청	· 신청서 접수(온라인) · www.wbridge.or.kr	참여기관 및 인력
↓		
선정평가	· 적격성 평가 결과 및 지원대상 선정	WISET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 참여 기관에서 해당 지역의 접수처에 신청 ·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	참여기관 WISET/지역사업단
↓		
사업 수행	· 참여기관의 인력활용 및 사업수행 · 참여인력의 연구개발 수행 · 교육훈련 및 멘토링 참여	WISET/지역사업단
↓		
교육·멘토링 지원	· 인력의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참여인력 WISET/지역사업단
↓		
중간점검 및 현장컨설팅	· 사업수행 중간점검 및 현장컨설팅 실시	WISET/지역사업단
↓		
연차평가	· 계속지원여부 평가	WISET/지역사업단
↓		
최종보고서 접수 및 사업비 정산	·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회계정산 실시	WISET/지역사업단

※ 지원 절차는 각 상·하반기 별도 진행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5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예시)

개인 | 기업 | 마이페이지 개인 안내 | 자세히 보기

고용24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글자 크기 설정

로그아웃 | 18년03호 | 시간연장 | 마이페이지 | 검색

재용정보 | 취업지원 | 실업급여 | 직업 능력 개발 | 출산휴가-육아휴직 | 전체 메뉴

마이페이지(개인)

마이페이지(개인) 1

회원정보관리 | 맞춤정보 | 참여 | 민원신청 현황 | 서비스이력 | 구직관리 | 직업훈련관리

참여 프로그램 관리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 청년도전지원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 (국민취업)일경험프로그램
- 청년내일채움공제
-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 청년성장프로젝트
- 중장년내일센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2

-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마이페이지 > 참여 프로그램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일자리 신청내역 | 일자리 참여내역 3

신청일자: 2025-01-07 ~ 2026-01-06 | 직업일여 | 오늘 | 1주일 | 1개월 | 6개월 | 1년 4

사업명: [검색] | 검색 5

6개월 이상 선택하여 검색

홍길동 님의 참여 내역

검색건수 0건 | 10개 | 적용

사업유형	사업명	기관명	참여기간	진행상태
검색된 내용이 없습니다.				

1

참고사항

검색결과 내용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캡처하여 제출 (이름이 보이도록)